

공단-DGUV간 공동연구 실무회의 참가 국외출장 계획

1. 목 적

- 독일 재해보험조합(DGUV)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예방문화 평가지표 (Prevention Culture Indicator) 개발과 관련하여
 - 독일 측 공동연구 실무그룹과 그간 양측에서 실시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한 실무협의 등 차질없는 연구추진을 위함

2.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18. 12. 12(수) - 12. 16(일) [3박 5일]
- 출 장 지 : 독일 드레스덴
- 출 장 자
 - 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전문직 4급 김경우
 - 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 전문직 4급 최윤석

3. 주요 수행사항

- 공동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협의
 -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유
 - 공단-DGUV에서 제안된 예비문항 최종 통합 (공통요인 중심으로 세부 문항정리)
 - 구성된 최종 예비문항 언어 확정
 - 2019년 연구회의 진행 방법 및 2년차 통합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등
 - 향후 추진계획 협의
 - 2019년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예비문항의 요인구조 확인 방법
 - 사업장 섭외, 설문조사 규모(인원), 자료 코딩 및 통계분석 방법 등
 -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방법 등
- ※ 회의자료 : 【붙임2】
- ※ 공동연구 결과(2018) : 【붙임3】

4. 출장일정

일 정	내 용
○ '18. 12. 12(수)	○ 출국 (인천 → 드레스덴)
○ '18. 12. 13(목)~12. 14(금)	○ 공동연구 실무회의 - 연구진행 상황 공유·연구결과 협의 - 향후 연구 진행방향 논의 등
○ '18. 12. 15(토) ~ 12. 16(일)	○ 귀국 (드레스덴 → 인천)

5. 행정사항

- 동 사업은 2018년도 국제협력 사업계획 중 『글로벌 예방문화 선행지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』 사업으로 추진
 - 국내운임(근무지→인천공항, 인천공항→근무지)은 소속부서 국내여비로 처리
 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
- ※ 선물신고안내문 : 【덧붙임1】

【덧붙임1】
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

-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
-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를 작성하여 **감사실로 제출**
 - *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(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)

↓ (신고서 제출)

안전보건공단
(감사실)

-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즉시 신고 접수
-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**선물 신고 접수**
 - *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(붙임 4)에 기록·유지
 - *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·유지 가능
- 신고받은 날부터 **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**
 - * 선물관리대장(붙임 5)에 기록·유지
 - *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, 선물 사진, 규격서 등 첨부

↓ (이관)

고용노동부장관

-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

↓ (재이관)

인사혁신처장

-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